

서울고등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27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소영진
변호사 김현석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마상미, 사봉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54822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70,053,175/5,086,474,277

지분에 관하여 2018. 8. 3.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9,1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AB생, 2018. 3.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20대에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나. 망인은 전처 E(중화인민공화국 국적, 1980년대 중반에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과 미국으로 이민, 2009. 10. 8.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망인 사망 전 생존 자녀)을 두었고, 1978년경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전처 사망 후인 2010. 2.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와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다. 망인은 2018.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망인 사망 후 2018. 4. 17. H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F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망인을 공동상속하고, 법정상속분은 피고의 경우 3/9, 원고들과 F의 경우 각 2/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준거법과 상속인의 확정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3.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전제되는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2) H 부동산

망인이 H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H 부동산의 가액은 5,086,474,27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K 부동산

가)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 토지에 관하여 198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3. 9.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그 지상에 신축된 K 건물에 관하여 1986. 1. 28.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등기된 내용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K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로서 그 등기된 내용대로 K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K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망인이 원고 A에게 K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갑 제10 내지 18, 20, 25 내지 27, 30, 34, 46 내지 57호증, 을 제4,

5, 11 내지 13, 17, 21, 30,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A에게 K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K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주장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이에 따라 K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

(1) 취득자금 출처

(가) K 토지 매수 당시 매매대금은 365,750,000원(계약금 1983. 1. 20.자 40,000,000원, 중도금 1983. 2. 4.자 160,000,000원, 잔금 1983. 3. 8.자 165,750,000원)이었다.

그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은, ①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일부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그 지급 당시 원고 A는 만 27세(AC생)로서 그로부터 3년 전인 1980. 2. 22.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망인이 운영하는 위 L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고, 그 급여 외에 달리 보유 재산은 없었으며, K 토지 매수 이후인 1984. 1. 14. 비로소 위 L한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잔금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1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직접 조달하여 지불할 정도의 자력을 갖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는 망인이 한의사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일군 가업을 승계할 유일한 자녀였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K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출자에 기한 권한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된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있는 것 외

에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K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매도인에게 지급될 당시 원고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었던 망인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잔금 165,750,000원은, ① K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두 달 여 지난 1983. 5. 26. 원고 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225,000,000원으로 된 AD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그로부터 6년 정도 후인 1989. 2. 28.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되었던 점, ② 원고 A는 위 L한의원 한의사로 계속 종사하여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1989년 말경 200,000,000원을 AE은행 신탁금융상품에 불입하기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원고 A가 위 잔금을 A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력으로 분할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와 달리 망인이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K 건물 신축 공사비용은 3억 6,000여 만 원인데, 망인이 원고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 신축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자금을 직접 부담하였거나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한의사 종사 경력, 신탁예금 보유, K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이력에 비추어, 1983년 초경 필요하였던 K 토지 초기 매수자금과는 달리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1985년 말경 진행된 K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관련 문서 보관 현황

(가) K 토지와 관련하여, 망인은 매매대금 지불에 관한 영수증, 취득세 등 세금 납부 영수증, 등기비용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증여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잔금은 원고 A가 채무자로서 K 토지 담보부 대출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상황에서, 위 영수증들의 소재만으로 망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K 토지 매수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던 원고 A는 K 토지 매수를 위한 '외국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미 H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추가로 K 토지를 취득하는 데 관계법령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원고 A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K 건물과 관련하여, N의 진술 내용(을 제21호증)상 N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K 건물에 관한 설계도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당초부터 망인이 위 설계도를 비롯하여 K 건물 신축과 관련된 제반 문서를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다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 A는 신축에 관한 건물 공사도급계약서, 건물 심의도면, 시방서, 건축비용 견적서, 건축비 지출내역 장부 및 1990년경 건물 증축에 관한 설계도와 설계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은 물론, 2013년경 논의가 있었던 호텔사업 관련 제안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가 망인이 보관하던 위 문서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부동산 관리 상황

(가) K 건물 신축 후, 망인은 H 건물에 있던 기존의 L한의원을 아들인 원고 A에게 물려주고 K 건물에 M한의원을 개업·운영하였고, K 건물에 망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I협회 사무실을 두었으며, 건물 임차인 선정,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원으로 K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제반비용을 처리하여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K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비롯한 제반 사무와 자금의 처리는 모두 원고 A 명의로 이루어졌고, 망인은 M한의원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과 월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K 건물 임대차관리장부에 기재하고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원고 A의 직접 입회 하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고,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원고 A도 관여하였다.

한편,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H 건물에 있는 기존의 L한의원을 승계받아 운영하면서 망인 소유의 건물인 H 부동산을 망인이 K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H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이지만 망인이 일군 가업을 승계할 유일한 자녀인 원고 A가 망인이 운영하던 L한의원을 승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의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되, K 건물은 원고 A의 소유이지만 망인이 한의업과 I협회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그곳에 M한의원을 개업하고 위 협회사무실을 두어 운용함으로써, 각 건물의 소유자와 실무적 관리행위의 주체가 뒤바뀐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망인의 상속재산 관리 현황

망인은 2017. 6. 30. 원고 A로부터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는 상속포기서를 받아 두었고, 2017. 12. 말경 골절상을 입어 건강이 악화된 후 2018. 1. 3. H 부동산에 관하여만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 24. 3억 원 상당의 예금을 해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U 변액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하였고, 사망 당시 T은행에 대한 14,946,930원의 예금채권만 남겨 둔 것 외에는 달리 남긴 재산이 없었던 한편, K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K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재산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하면서도, K 부동산에 대하여는 무려 27년 정도 전에 작성된,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만 있는 상태에서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등기이전이나 유언 등 처분이나 상속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도 K 부동산을 원고 A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와 망인은 1990. 7. 13. K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았다.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

1. 재산명세 : K 부동산

2. 재산소유권자의 신원 : 원고 A

3. 상기 재산권에 대한 현 재산소유권자의 의견

(1) 상기재산은 본인 A의 가친인 D씨께서 행의제세하여 평생을 노고로 누적한 재산이며,

본 건물 낙성시 부득이한 주위의 환경 및 본인이 차남인 관계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본 건물 건축 시 출자한 가친 D씨를 비롯한 전 가족 공동으로 처리되어지고 귀속되어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됨을 동 확인서를 통하여 서약하는 바이다.

(2) 본인은 상기재산의 관리 및 경영권에 대하여 가친이 생존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친 D씨께서 전권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가친 D씨가 유고시에는 당연히 가족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라 동 재산을 처리한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독자적인 권리를 갖지는 못한다.

(3) 동 확인서는 본인 A와 가친 D씨가 당사자가 되어 기명날인을 하고 AF 선생 AG 선생을 입회인으로 하여 기명날인토록 한다. 기명날인이 끝나면 공증을 함으로서 동 확인서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이 사건 확인서는 K 토지 매수 시점으로부터는 7년 정도, K 건물 완공 시점으로부터는 4년 정도 지난 후에야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그 무렵 전처 O과 사이의 가정불화로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K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1986.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6. 12.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90. 2. 24. 해제를 원인으로 위가등기를 말소하였고, 1990. 7. 13.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1992. 8. 24. 망인을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O은 원고 A를 상대로 1992. 11. 7. 이혼과 K 부동산 등에 관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92. 11. 10. O을 권리자로 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 A와 O은 1993. 3. 11. 합의이혼하였으며, 1995. 2. 11. 망인의 위 가처분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후 1995. 2. 15. O의 가압류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그 이후에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K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O의 원고 A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K 부동산이 그와 같은 재산분할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가부장적인 망인이 K 토지의 초기 매수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아버지로서 K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망인의 권한을 유보하고 원고 A를 망인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원고 A에게 K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기타 사정

(가) K 부동산을 망인의 소유로 보도한 언론 기사가 있거나, 망인과 원고 A 부자지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지 못하는 망인의 지인들이 K 부동산을 외견상으로 망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K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명의만 원고 A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현재 K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29. 원고 A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T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합계 3억 5,000만 원의 전세권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고 A는 건물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다만, 망인이 원고 A에게 K 토지 매수자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증여액 2억 원을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5년 기준)를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708,951,233원(=2억 원×상속개시 당시인 2018년

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44/증여 당시인 198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9.549, 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4) J아파트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4. 다. 4)항 부분 기재와 같다(망인이 피고에게 피고가 J아파트 매수자금원으로 주장하는 AH아파트와 AI아파트 처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보험료

망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U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보험 계약에 따라 장차 수령하게 될 보험금이 2억 5천 만 원 상당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보험금 2억 5천 만 원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6) 예금채권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T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 14,946,93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예금채권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7)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합계(A)는 6,060,372,440원(=H 부동산 5,086,474,277원+K 토지 매수자금 증여액 708,951,233원+보험료 증여액 250,000,000원+예금채권 14,946,930원)이 된다(원고 A는 망인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의 채무와 망인이 사용한 K 건물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3/18$ (=법정상속분 $3/9 \times 1/2$), 유류분액은 1,010,062,073원(=6,060,372,440원 $\times 3/18$)이고, 원고들과 F의 유류분 비율은 각 $2/18$ (=법정상속분 $2/9 \times 1/2$), 유류분액은 각 673,374,715원(=6,060,372,440원 $\times 2/18$)이다.

2) 특별수익액(C)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H 부동산 가액 5,086,474,277원과 보험료 250,000,000원을 합한 5,336,474,277원이고, 원고 A의 특별수익액은 K 토지 매수자금 중 708,951,233원이다.

3) 순상속분액(D)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4,946,93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순상속분액은 4,982,310원(=14,946,930원 $\times 3/9$)이고, 원고들과 F의 순상속분액은 각 3,321,540원(=14,946,930원 $\times 2/9$)이다.

4) 유류분 부족액 계산(단위 원)

상속인	유류분액(A×B)	상속인별 특별수익액 (C)	상속인별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 A×B-C-D)
피고	1,010,062,073	5,336,474,277	4,982,310	(-)4,331,394,514
원고 A	673,374,715	708,951,233	3,321,540	(-)38,898,058
원고 B	673,374,715	0	3,321,540	670,053,175
F	673,374,715	0	3,321,540	670,053,175

라. 소결론

이상 살핀 내용에 의하면, 원고 A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고, 원고 B의 유류분 부족

액은 670,053,175원이다.

그런데 증여보다 먼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유증(민법 제1116조)은 H 부동산 뿐이고, H 부동산 가액(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F의 유류분 부족액을 포함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H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H 부동산 중 670,053,175/5,086,474,277(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H 부동산 가액)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8. 3.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유류분 반환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유류분 반환을 명하고,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민승

판사 박지연

별지

목 록

1. 서울 강남구 H 대 342.9m²

[도로명주소] 서울 강남구 V 대 342.9m²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61.43m²

2층 168.87m²

3층 168.87m²

지층 211.96m²

(용도 - 지층 : 다방, 1층 : 점포, 2층 : 한의원, 3층 : 주택)

3.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J아파트 X동 제1층 Y호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Z, X동 Y호 (J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163.81m²

4. 서울 강남구 K 대 636.4m²

[도로명주소] 서울 강남구 AA

5.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의원)

1층 내지 4층 각 317.52m²

지하 447.12m²

(용도 - 1층 : 음식점, 주차통로 기타, 2층 : 의원, 3층 : 사무실, 4층 : 사무실, 주택)

끝.